



1. 귀하는 다음 사항에 적힌 및 미 농무부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증명하는 바입니다.

- 본인은 아래에 명시된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과 기준을 읽어보았습니다.
- 모든 가족 구성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, 가족의 총 수입이 아래 자격기준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가족구성원이 미주리 주 내에 거주 중입니다.
- 가족구성원이 현재 월(月)에 두 번 이상 긴급 식량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.

귀하는 다음 사항을 이해하는 바입니다:

- 수혜 비적격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.
- 수혜 식품은 본인 가정 외의 곳으로 판매, 물물교환 또는 증정될 수 없습니다.

자격 요건

다음 두 가지 중 하나 충족 시 긴급식량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.

- 1)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이상의 공공 지원을 받는다.
- 2)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, 가계의 가족구성원 수 대비 총 월수입이 최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. (NPA 기준)

참고: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가구는 2번 항목에서 제외.

자격 기준표

(2024년 4월 1일 시행)

아래의 공공지원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:

연방빈곤률의 185%

- 임시지원 프로그램(TA/TANF)
-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(Food Stamps/SNAP)
-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보조 프로그램(LIHEAP)
- 미주리 주 헬스넷 MO HealthNet (변경 전 메디케이드 Medicaid)
- 공공 주택 지원 (주택도시개발부 HUD, 섹션 8)
- 시각장애인 보조지원(SAB)
- 맹인 연금(BP)
- 생활보조금(SSSI)
- 여성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(WIC)

구성원 수	월 수입
1	\$2,322
2	\$3,151
3	\$3,981
4	\$4,810
5	\$5,639
6	\$6,469
7	\$7,298
8	\$8,128

참고:메디케어,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보험, 실업급여, 은퇴연금은 공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.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각 추가가구원 당 829 달러를 추가할 것.

미국 연방시민법과 미국농무부(USDA) 시민권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, 피부 색, 출신, 성별(성 정체성과 성적취향 포함), 장애, 나이에 근거한 차별이나 이전 시민권 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프로그램 정보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대체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(예:브라유 점자, 큰 활자, 음성테이프, 미국 수화) 주 혹은 지역 관할기관이나 USDA TARGET센터 (202) 720-2600 (음성 및 TTY) 또는 연방 중계 서비스 (800) 877-8339를 통해 USDA로 연락하십시오.

차별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양식 AD-3027, USDA Program Discrimination Complaint 을 작성해야 합니다. 이 양식은 온라인 주소<https://www.usda.gov/sites/default/files/documents/USDA-OASCR%20P-Complaint-Form-0508-0002-508-11-28-17Fax2Mail.pdf> 또는 지역 USDA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(866) 632-9992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 양식에 반드시 민원인의 이름, 주소, 연락처, 차별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제기된 시민권 위반사항의 성격과 날짜를 시민권 차관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 작성한 양식 AD-3027이나 편지를 다음과 같이 USDA로 보내주십시오;

- 1: 우편
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
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
1400 Independence Avenue, SW
Washington, D.C. 20250-9410;
또는
- 2: 팩스
(833) 256-1665 or (202) 690-7442; 또는
- 3: 이메일:
program.intake@usda.gov

본 기관은 기회 균등 제공기관 입니다.

미 농무부 식품 지원 신청서 사용 지침

(양식 FD-15A)

본 신청서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파트 1은 신청 자격 기준과 USDA 비차별 성명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. 파트 2는 성명서 및 신청인과 그의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.

푸드 팬트리 직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:

1. 서명 시 양식 FD-15A의 두 파트 모두를 보여줄 것. 신청인은 파트 2의 내용을 읽거나 서명 전에 자격기준표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FD-15A 양식의 파트 2에 푸드 팬트리 이름과 식품 배부 월/연도를 기입할 것.
3. 공공지원(PA) 승인, NPA 승인 또는 비승인 항목을 기입함으로써 신청가구의 적격성 또는 비적격성을 증명할 것.
 - 모든 가구원이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, 공공지원 승인(Approved PA) 항목에 체크할 것.
 -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원이 있을 시, 본 가구는 반드시 소득 기준표에 충족해야함. 충족 시 Approved NPA 항목에 체크할 것.
 - 본 가구가 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, 승인거부 (DENIED) 항목에 체크할 것.

가구 대표(신청인)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:

1. 양식 FD-15A 파트 1의 긴급 식량 지원 신청 자격 기준을 검토할 것.
2. 양식 FD-15A 파트 2의 다음 항목을 기입: 구성원 수, 주소 및 도시명, 날짜.
3. 수령인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사실을 보증함.